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134
----------	------

발의연월일 : 2025년 8월 일

발의자 : 박선미의원

1. 제안이유

- 가.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 제32168호)이 개정되어 여비 부정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금액이 상향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여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무원 복무 기강을 확립하려는 것임.
- 나. 아울러,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순화하는 등 조례 내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금액을 현행 2배에서 5배로 상향함
(안 제4조제1항, 제3항)
- 나. 조례의 적용 대상을 ‘하남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명확히 규정함
(안 제2조제1항)
- 다. 그 밖에 띄어쓰기, 문장부호, 어려운 용어 등 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함
(안 제3조, 제4조, 제6조)

3. 개정조례안: 덧붙임

4. 관계법령 발췌서: 해당없음

5. 신·구조문 대비표: 덧붙임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이”를 “지방공무원이”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공무원”을 “하남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2배”를 “5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허위의”를 “거짓”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2배”를 “5배”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영을 준용한다.

제6조제2호 중 “영 제17조·제22조·제26조”를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하남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3조”를 “「하남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3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동조제2항”을 “같은 조제2항”으로, “동조제4항”을 “같은 조제4항”으로, “동조제3항”을 “같은 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을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하남시의 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u> 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u>지방공무원이</u> ----- ----- ----- ----- -----.</p>
<p>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u>공무원</u>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 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 할 수 있다.</p> <p>② · ③ (생략)</p>	<p>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 <u>하남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u>-----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3조(여비의 지급기준) ① (생략)</p> <p>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규정 별표 1의 <u>각호</u>를 적용한다.</p>	<p>제3조(여비의 지급기준)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각 호</u>-----.</p>
<p>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수령한 경우 부정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수령액의 <u>2배</u>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p> <p>② 제1항의 여비 부정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p>	<p>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 ----- ----- <u>5배</u> ----- -----.</p> <p>② ----- -----.</p>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생략)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생략)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하남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3조 및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

1. 거짓 -----

--

2. (현행과 같음)

③ -----

-- 5배 -----.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영을 준용한다.

1. (현행과 같음)

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

-----.

3. (현행과 같음)

4. -----

-- 「하남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3조 -----.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

항”으로 본다.

6. (생략)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 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항”으로 본다.

6. (현행과 같음)

7. -----

----- 같은 조제2항 -----

----- 같은 조제4항 -----

----- 같은 조제3항 -----
-----.

8. -----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